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50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수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,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“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”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,

동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현행과 같이하고, 제1조 목적 중 “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”을 “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”로 하며,

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““공항활성화사업”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”로 하며,

제3조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현행과 같이 하고,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여 제1호

부터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”를 “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”로 하여 제4호로 각각 수정하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가. 동 개정조례안 제명을 현행과 같이 함(안 제명)
- 나. 동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중 “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 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”을 “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 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”로 함(안 제1조)
- 다.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““공항활성화사업”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”로 함(안 제2조)
- 라. 동 개정조례안 제3조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현행과 같이 함(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- 마.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”를 “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”로 하여 제4호로 함
(안 제4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명을 현행 조례(이하 “현행”)와 같이 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중 “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”을 “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”로 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““공항활성화사업”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”로 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3조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현행과 같이 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현행과 같이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고도제한 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”를 “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”로 하여 제4호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교통위원회안)
<p>서울특별시 <u>김포공항</u> 활성화 지원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항공사업법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</u>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항공운송사업</u>”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<u>국내항공운송사업,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항공사업자</u>”란 법 제2조제10호·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<u>국내항공운송사업자,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“<u>공항활성화사업</u>”이란 김포공항의 <u>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</u>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공항활성화 사업자</u>”란 <u>공항활성화사업</u>을 추진하는 기관,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서울특별시 <u>김포공항 주변 지역</u> 활성화 지원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<u>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1. “<u>고도제한지역</u>”이란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역으로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고도지구 및 「<u>공항시설법</u>」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</p>	<p>서울특별시 <u>김포공항</u> 활성화 지원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항공사업법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공항활성화사업</u>”이란 김포공항의 <u>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</u>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김포공항의 이용편의성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소음대책지역</u>”이란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<u>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써 「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</u></p>	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김포공항의 이용편의성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<u>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은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</u>과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<u>친환경·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원 범위) 시장은 <u>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</u>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제항공노선 <u>신규개설</u> 2. <u>공항시설 사용료</u> 3. <u>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</u> 4. <u>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</u> 	<p>제4조(지원 범위) ----- <u>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타 공항 이전</u> 	<p>제4조(지원 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
<p>5. 그 밖에 시장이 <u>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② <u>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 자리 창출</u></p> <p>3. <u>고도제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</u></p> <p>4. <u>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</u></p> <p>5. ----- <u>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</u></p>	<p>(삭 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항시설 사용료</u> 2. <u>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</u> 3. <u>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</u> <p>4. 그 밖에 시장이 <u>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</u>의 동의를 받는 경우</p>

<p>제6조(지원금 교부)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지원금 교부) —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</p>	<p>제6조(지원금 교부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자치구 지원)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자치구 지원) ———— ——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자에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 자치구에 지원할 —— .</p>	<p>제7조(자치구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사업자의 의무) ①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재정지원요청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상 필요한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8조(사업자의 의무)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.</p> <p>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.</p> <p>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.</p>	<p>제8조(사업자의 의무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지원금의 반환) 시장은 지원 대상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지원금의 반환) —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 .</p>	<p>제9조(지원금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감독)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</p>	<p>제10조(감독) ① —— 재정지원을 받은 자치구 및 사업자에게 ——</p>	<p>제10조(감독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자에게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,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”를 “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”을 “김포공항의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 범위)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항시설 사용료
2.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
3.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항공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공항활성화사업”이란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 범위) (생략)</p> <p>1.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</p> <p>2. 공항시설 사용료</p> <p>3.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</p> <p>4.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1조(목적) _____ _____ _____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_____ _____.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_____ 김포공항의 _____ _____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 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1. 공항시설 사용료</p> <p>2.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</p> <p>3.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</p>